수출 중소기업의 무역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무역정보 연계

업 무 협 약 서

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무역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무역정보 연계 업무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협약의 목적) 본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"양 당사자"라 한다)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필요한 무역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의 내용)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속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양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역정보의 연계
2. 연계된 무역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제공, 공유 및 개방
3. 연계된 무역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
4.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무역정보 애로 해소

제3조(협약의 세부실행) 상기 제2조 협약 내용의 세부실행은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정보 제공) 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, 고객 등 관련당사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제5조(신의성실의 의무) 양 당사자는 본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 해지 통보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①양 당사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②본 협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 등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,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.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10월 31일

한국콘텐츠진흥원	산업통상자원부
본부장 박 경 자	무역투자실장 권 평 오
박 경 자	권 평 오